

법

률

국회에서 의결된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12월 8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여성가족부장 이정옥

● **법률 제17641호**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사람이 장애”를 “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”로, “13세 이상의 아동”을 “아동”으로, “간음하거나 장애”를 “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장애”를 각각 “13세 이상의 장애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장애”를 “16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 및 장애”로 한다.

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·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·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성폭력범죄”는 “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”로, “피해자”는 “피해아동·청소년”으로 본다.

제34조제2항제2호 중 “학교 및”을 “학교,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아동복지시설”을 “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제5조”를 “제9조”로, “제10조”를 “제17조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

- 2의3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

- 13의2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

- 16.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·지도·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(이하 “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”라 한다)

제41조제3호 중 “학교”를 “학교, 유치원”으로 한다.

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,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56조제1항제16호 중 “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·지도·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(이하 “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”라 한다)”을 “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”로 한다.

제57조제3항제11호 중 “제56조제1항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”를 “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”로 한다.
법률 제11572호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중 “제52조의”를 “제49조제3항 및 제52조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572호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,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또한, 피해아동·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·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피해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그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,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- 가. 16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함(제13조제3항).
- 나.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사·심리·재판을 받는 피해아동·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제25조제3항 신설).
- 다.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함(제34조제2항).
- 라. 피해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그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함(제41조제3호).
- 마.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(제53조의2 신설).
- 바.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함(제11572호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).

<법제처 제공>